

# 유권자의 권리

## 다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1**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
  - 최소 18세 혹은 그 이상일 경우
  - 최근 거주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 있거나 중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상태가 아닐 경우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에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경우
- 2** 목록에 이름이 없지만 등록된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시 투표용지에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 위원단에 의해 투표권이 인정될 경우 유효표 처리 됩니다.
- 3** 선거 시간이 종료된 후에도 투표 줄에 서있을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4** 비밀 투표의 권리가 있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거나 투표 방법을 안내받지 않고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5** 실수 했을 경우 새로운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다음의 방법을 따르세요.

투표장소에 있는 선거인단에게 문의하여 새로운 투표용지를 받고,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를 교환하세요. 투표장의 선거 사무소에 문의하여 새로운 용지로 교환받거나, 혹은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6** 투표시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고용주 혹은 조합 대표자는 불가합니다.
- 7** 우편으로 전달 받은 투표용지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역 어디든 가능합니다.
-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선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선거구에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충분한 수의 인구가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 9** 선거 절차에 관련하여 선거 위원단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경우, 질문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당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답변을 멈출 수 있습니다.
- 10** 부정, 불법 선거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 총무처장관 사무소이나 선거 위원단에게 신고 하십시오.

🌐 웹사이트 [www.sos.ca.gov](http://www.sos.ca.gov)  
☎ 전화 (800) 345-VOTE (8683)  
✉ 이메일 [elections@sos.ca.gov](mailto:elections@sos.ca.gov)

만일 위의 권리 중 하나라도 거부되었다고 여겨질 경우, 주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직통 번호로 신고하세요. (800) 345-VOTE (8683).